

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이민 정책:

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부모 추방 유예 (DAPA)

2014년 1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은 일부 불법체류자 신분의 부모들을 위한 DAPA (Deferred Action for Parents of Americans and Lawful Permanent Residents,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부모 추방 유예)라고 불리는 새로운 이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. 만약 하기의 신청 자격 여부를 만족시킨다면 DAPA의 신청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주의: 최근의 텍사스 법원의 판정으로 인해 DAPA는 일시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지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 이것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닙니다. DAPA 신청이 가능해질때 바로 신청하기 위해 계속 준비하시길 권합니다.

DAPA 의 신청 자격 여부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2014년 11월 20일 또는 그 전에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.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.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November 2014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7 1554 544 1892"> <thead> <tr> <th>S</th> <th>M</th> <th>T</th> <th>W</th> <th>TH</th> <th>F</th> <th>S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2</td> <td>3</td> <td>4</td> <td>5</td> <td>6</td> <td>7</td> <td>8</td> </tr> <tr> <td>9</td> <td>10</td> <td>11</td> <td>12</td> <td>13</td> <td>14</td> <td>15</td> </tr> <tr> <td>16</td> <td>17</td> <td>18</td> <td>19</td> <td>20</td> <td>21</td> <td>22</td> </tr> <tr> <td>23</td> <td>24</td> <td>25</td> <td>26</td> <td>27</td> <td>28</td> <td>29</td> </tr> <tr> <td>3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S	M	T	W	TH	F	S							1	2	3	4	5	6	7	8	9	10	11	12	13	14	15	16	17	18	19	20	21	22	23	24	25	26	27	28	29	30			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2014년 11월 20일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합니다. □ 2014년 11월 20일에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.
S	M	T	W	TH	F	S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	3	4	5	6	7	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9	10	11	12	13	14	1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6	17	18	19	20	21	2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3	24	25	26	27	28	2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

□ 범죄행위를 한 적이 없거나 어떠한 이민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.

(모든 범죄행위 또는 이민 기록이 DAPA 를 위한 자격요건을 박탈하는 것은 아닙니다. 이는 위반 내용 또는 범죄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하기 전에 관련 기록의 사본을 확보하고, 경험있는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긍정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입니다.)

주어지는 혜택들:

- 취업 허가서
- 추방 유예 (국외 추방으로부터의 보호)
- 사회보장번호 (소셜 시큐리티 번호)
- 운전면허/주 신분증 신청자격

지금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?

신청 자격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시고, 신청비용 \$465 를 지불하기 위한 돈을 준비하십시오.

□ **신분증명:**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
- 예를 들면: 출생증명서 및 사진이 있는 신분증 (ID), 여권, 학교 또는 군대 신분증, 영사증명서 (마트리쿨라 콘솔라르-*Matricula Consular*: 영사관에서 발급한 신분증)같은 본국에서 발행한 신분 증명 서류,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일반신분증 같이 이름과 사진이 있는 미국에서 발행한 서류.

□ **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(그린카드 소지자)인 자녀와의 관계 입증**

- 예를 들면: 자녀의 출생증명서

□ **자녀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(그린카드 소지자)임을 입증**

- 예를 들면: 자녀의 미국 출생증명서, 미국 여권, 시민권 증명서, 영주권 카드 (그린 카드) 등

□ **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미국에서 거주한 입증:**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미국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날짜와 이름이 표시된 서류를 찾아보십시오.

- 예를 들면: 전화 기록, 의료 기록, 고용 기록, 학교 기록, 종교 또는 지역사회조직의 기록, 보험 증서, 세금 기록, 은행 명세서, 재정 기록, 신용카드 명세서, 우편환 영수증, 임대 계약서, 권리증서, 저당권 계약서 (모기지), 전기 및 수도세 등 납부영수증, 클럽 멤버십, 정부 또는 군대 기록 등.

□ **2014년 11월 20일에 미국에 체류했음을 입증**

- 예를 들면: 전화 기록, 은행 명세서, 신용카드 명세서, 의료기록, 고용기록, 사진, 이름이 표시된 버스, 기차 또는 비행기의 영수증 또는 그 밖의 다른 서류들.

주의: 만약 2014년 11월 20일에 미국에 체류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, 가능한 2014년 11월 20일과 가까운 날로써, 2014년 11월 중 미국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

□ **신청비:** 신청 비용 \$465를 위해서 돈을 마련하기 시작하십시오. 또한,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

□ **범죄 기록:** 만약 경찰에게 연락 받은 적이 있다면, 법원 기록, 소환장, 또는 다른 관련서류 등의 사본을 마련하시고, 신청하시기 전에 경험있는 법률 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□ **기록 보관:** 신청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노트 또는 파일 폴더(서류철)에 보관하시고, 서류 원본을 유지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